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25

발의연월일: 2021. 11. 25.

발 의 자:조명희·김석기·김성원

박대수 · 박덕흠 · 성일종

조경태 · 추경호 · 하영제

홍문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농지나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일 이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이후 귀농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이 필요하며,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한 현행 규정을 농촌지역으로의 이주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기간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 농인이 되는 경우 해당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야"를 "임야(농지 및 임야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 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 한 감면) ① ~ ③ (생 략) 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 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 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 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 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 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임야(농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지 및 임야를 취득한 사람이 그 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 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이 되는 경우 그 농지 및 임야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를 포함한다)-----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 -----2025년 12월 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31일-----.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

세를 추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